상담기관 안내

- ◎ 모든 상담기관의 상담은 비밀유지됩니다.
-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 대학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 기구(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희롱고충상담 창구 등) 설치
- 소속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참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02-880-2424~5 / hrc.snu.ac.kr 여성과학기술인 사건 상담 가능 **법률상담**

- 연구소·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 모든 직장(연구소, 기업 등)에 고충처리위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충상담실 · 인사팀 법무팀 등이 관할
- 취업규칙과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성폭력 상담기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739-8858

fc womenlink or kr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 www.sisters.or.ki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5 www.hotline.or.kr

담겨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성희롱 상담기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노동상담

@ 02-706-5050 / counsel.womenlink.or.kr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02-3141-3011 / www.equaline.or.kr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번없이1331 / www.humanrights.go.kr

고용노동부 노동청 진정

© 국번없이1350 / minwon.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132 / www.klac.or.kr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 www.yeono.org

● 성폭력 의료 구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02-3400-1700 / www.smonestop.or.kr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 02-870-1700 / www.smsonestop.or.kr

- 상대방의 언행으로 내가 느끼는 불쾌감에 확신을 갖는다.
- 행위 중지, 사과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 조직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나 상사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한다.
- 필요한 경우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한다.
- 평소 동료들 사이에 존칭을 사용한다.
- 불쾌한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억지로 웃지 않는다.
- 동료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휴일이나 늦은 시각에 사적인 이유로 문자나 전화연락을 하지
- 강의나 대화 중 성차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미리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한다.
-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부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열린 질문을 한 후 의견을 듣는다.
- 자신의 언행에 상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즉시 언행을 멈춘다.

회식문화를 바꾸기 의한 실천사항

- 회식날짜와 장소는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려하고 함께 정한다.
- 자율적인 회식참여를 보장하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 음담패설을 하지도, 재밌는 척 듣지도 않는다.
-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에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동료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
- '여자(남자)니까' '어리니까' 등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피해자 대처

- 불쾌감과 명확한 거부의사를 단호하고 정중하게 표현한다.

- 성폭행을 당한 경우 씻지 말고 산부인과에 간다.

가해자 대처

-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언행을 중지한다.
- 나의 어떤 언행이 불쾌감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모를 때는 물어본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 자신의 행동습관과 태도를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주변인 대처

-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신뢰를 준다.
-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안내한다.
- 사건과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소문을 내지 않는다.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는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는다.

관리자 · 상사의 역할

- 사건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 지위, 업적으로 편견을 갖지 않는다.
- 성희롱 인지, 상담 접수 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건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조직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 성희롱 행위가 경미하고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문제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성희롱 행위가 용인되지 않음을 단호히 설명한다.
- 성희롱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법적인 대응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 가해자 또는 기관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성폭력 범죄는 형사고소 할 수 있다.

관리자의 법적 책임

○ 관리자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 벌금 등이 부과된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제한 연구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협력하여 발간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 지침서』에 상세한 내용이

원고 이경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만화 조규상 디자인 김현수(Baseline)

과학기술분야는 장시간의 연구실 생활, 남성 중심의 연구실 문화와 위계 구조, 좁은 전공 분야에서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선후배, 동기 등 친밀하면서도 지위에 따라 밀접한 영향력을 갖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처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성희롱·성폭력이란?

모든 개인은 **성적자기결정권**, 즉 외부의 간섭 없이 성(性)에 관하여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성회롱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 단체 생활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침해,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에게 예방 및 처리 책임이 부과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 등)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례

연구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스킨십



- 사려 실험이나 연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밀착하거나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메쇄된 실험실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바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어색한 사이가 될까봐 거부의사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동의라 여기고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라도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정중하고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연구실 일상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 에 연구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농담, 외모 품평, 성적인 평가나 비유, 동료의 사생활 이야기, 성에 대한 질문을 하여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체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 적어도 웃거나 동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쾌감을 표현하는 동료가 있다면 지지하고 협력합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 제 회식자리에서 술따르기·끼워앉히기·러브샷·블루스 강요, 성차별적인 농담. 음담패설 등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대) 분위기 깨는 것을 두려워 말고 정중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강요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계속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 깰까봐 염려하여 참거나 맞춰주면 상대방은 성희롱을 반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때는 동료나 선후배 여럿이서 힘을 모아 정중하게, 불편함을 주는 언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예방을 위하여 귀가 동행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스킨십 시도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워크숍 등 외부 출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 (AR) 지방·해외 출장 시 성별이 다른 상사나 교수가 숙소를 하나만 예약을 하거나, 밤늦게 자신의 방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능하면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 있을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사적 영역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 (NB) 워크숍 숙소에서 여럿이서 함께 자고 있을 때 스킨십 등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체 가능하면 안전하게 자리를 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호하게 문제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 상사나 교수 등 높은 지위의 사람이 부하직원이나 제자에게 학업, 진로, 취업, 승진을 조건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대라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정중하고도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동의로 여기고 성적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스토킹

- 사업 스토킹은 피해자가 괴로움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지속적으로 불쑥 나타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입니다.
- 대 강하고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거절의 대화는 단 한번이면 충분합니다. '한번만 만나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지 말고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데이트성포력

- (API) 친밀한 관계, 성적 호감을 느끼는 관계, 연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성적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데이트성폭력입니다.
- 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가 하려 하면 "싫다"고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상대가 싫다고 할 때 그 의사를 존중하고 즉시 행동을 멈춥니다. 강한 거부에도 상대가 강제로 행동했다면 사과, 행동중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폭력을 반복할 때에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별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 (AE) 이별 후 민감한 신체 사진·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다 두려워 말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후,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차 피해



회식 후,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따라 탄 박선배

다음 날, 연구실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일상·학업·업무·대인관계 곤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주변인·가해자의 말이나소문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

- 가해자 옹호와 두둔, 사건 내용·신상 소문 유포,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 피해자 비난, 피해자의 평소 행실 험담
- 피해자에게 가해자 용서를 강권, 사건을 덮을 것을 요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하기
- 사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
-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기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 하지 않기